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95

발의연월일: 2020. 9. 3.

발 의 자:한무경・임이자・서일준

권성동 • 이만희 • 김영식

金炳旭・허은아・이 영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 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 대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.

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 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,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제7조).

법률 제 호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2년마다"를 "매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·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실태 조사) ① 중소벤처기	제7조(실태 조사) ①
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	
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	
여 <u>2년마다</u> 실태 조사를 하고	- <u>매년</u>
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
	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
	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
	<u>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
	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·관리
	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